

초등학교(강서)			제1장 총 칙
번호	명 청	위 치	
58	서울신기초등학교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4	
초등학교(성북)			
번호	명 청	위 치	
31	서울일신초등학교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79	
별표3중 고등학교의 수도여자고등학교 위치 란 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8"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13"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별표7중 유치원(강서)의 서울양목초등학교병 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 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유치원(강서)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 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봉사활동
			사.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부 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타 센터의"를 "기타 자 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 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호중 "경우"를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6조제3항후단의" 를 "제6조제3항의"로 한다.			
안 제13조중 "제6조·제7조 및 제12조의"를 "제6조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 지 제3항의"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p><b>제2장 새서울자원봉사센터</b></p> <p>제4조(설치 및 기능) ①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li> <li>4. 자원봉사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p> <p>제5조(조직구성 등) ①센터에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고, 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임기 등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등록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li> <li>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li> <li>3.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li> <li>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li> </ol> <p>제8조(운영의 대행) ①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b></p> <p>제9조(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포상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p>	<p>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li> <li>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li> <li>3.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li> <li>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li> </ol> <p>제8조(운영의 대행) ①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b></p> <p>제9조(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p> <p>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포상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p>
---	--

44 (第119回-第3次)

<p>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보 칙</b></p> <p>제12조(자문회의 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③자문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권한위임) 시장은 제6조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각종 사무 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569</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00년 5월 일 전 설 위 원 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00년 4월 24일 상정 의결)</p>	의안	569	번호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p> <p>가.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999. 10. 3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에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공자와 발주자 간의 분쟁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날로 증가하는 건설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1) 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3조)          ○ 심의기능 추가 :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문기능 추가 : 건설공사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p> <p>(2) 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정수하는 수수료를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의안	569				
번호					